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8권 제1호, 2023, pp. 11-22 https://doi.org/10.36498/kbigdt.2023.8.1.11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노승국†

교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요 약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법원판결, 온라인 여론, 자연어분석, 심신장애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rate of sentence reduction for reasons of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and investigate if it aligns with the actual practice. Various sources, such as the Supreme Court's Courtnet search system, the number of mental evaluation requests, and the number of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mental weakness" on Naver New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 has a negative opinion on reducing sentences due to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and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vagueness of the standards. However,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court strictly applies the redu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judgments and

2023년 05월 12일 접수; 2023년 06월 18일 수정본 접수; 2023년 06월 19일 게재 확정.
* 본 논문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경찰대학 박시범, 이수연님께 감사합니다.
† 교신저자 (skroh@police.ac.kr)

the number of requests for psychiatric evalu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recognition of perpetrators' mental disorders is declining, the public does not seem to recognize this trend. This creates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s trust in state institutions. Therefor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prosecutors, need to enforce the law according to clear standards to gain public trust. The judiciary also needs to make a firm decision on commuting sentences for mentally and physically infirm individuals and inform the public of the outcomes of its application.

■ Keyword : feeble-minded cond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urt's assessment, criteria for commutation

Ⅰ. 서 론

2018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PC방을 이용하던 가해자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난도질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렸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80여 회에 걸쳐 찌르고 베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바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케 되었다[1].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단지 김성수가 PC방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위 사건은 범행의 잔혹함과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 때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일반 대중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가해자 김성수와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 과정과 재판 중 우울증을 호소하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심신장애란「형법」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책임감경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약칭이다. 김성수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법원은 "투사검사 및 자기 보고형 검사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며 김성수의 심신장애 주장을 기각했다.[1)]

김성수의 심신장애 주장은 기각되었음에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달린 일반인(댓글 등 비정형데이터)들의 반응은 예상한 것과 사뭇 다르다. 심신장애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의견들을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형량 감경을 부정하거나 심신장애 감경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내용의 의견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김성수의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여론이 끊임없이 심신장애 감형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는 정신장애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달려있는 것은 물론 대중들은 심신장애 판단기준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내용에는 3.3. 지각 및 사고 부분에, "투사검사(HTP, Rorschach 등) 및 자기보호형 검사 결과(MMP Ⅰ-Ⅱ)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 다만 사소한 불필요한 감정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특히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왜곡 된 지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83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 주무관 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검사상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부분은 검사상에서도 우울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었고, 그 밖에도 분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표에 정서성에 6번 문항의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번 문항의 '얕은 감정', 8번 문항의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16번 문항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문항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2점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노1442 판결)

쉽게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물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들의 심신장애 주장이 잇따르고 관련된 뉴스들이 생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재판에서도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 판례와 대중들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황규리・이성규(2019) 및 송혜진・김석선(2021)은 신문기사를 통해 심신장애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선형(2015)은 심신장애를 통해 감형받은 조두순 사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중들의 의견에 대해 연구하였다[6-8]. 또한 김현옥(2022)는 진주영구임대아파트 살인방화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한 비정형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기사의 키워드가 주는 영향력을 제시하였다[9]. 그 외 심정원・김현정・김운한(202)은 언론보도에 나타난 심신장애 주요 단어간 연관어분석을 통해 타 연구에서의 연관어 분석을 심신장애 연구에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심신장애 연구를 언론기사의 키워드를 통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도출된 키워드간 빈도분석, 연관어분석 결과가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활용한 대중의 여론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의 법원 인정 여부와 여론으로 대변되는 자연어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심신장애에 대한 법적 쟁점

주된 정신장애에 대한 논의는 법관의「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판별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병명 혹은 증상과 같은 구체적인 정신장애의 판단기준은 명확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판단은 오롯이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우선 정신장애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조선진과 조은경은 회귀분석을 활용해 살인 범죄자의 양형에 어떤 독립변수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2]. 독립변수에 살인 혐의, 범죄 유형, 양형 인자, 심신장애 인정 여부, 정신질환의 유형, 국선 변호인 여부를, 종속변수에 법원의 1심 선고형량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심신장애를 근거로 감경 주장은 법관의 판단 영역으로 법관마다 유사한 조건에서 비슷한 판결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법관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관련하여 범행이 발생할 당시 정신질환 증상의 발현과 이로 인한 범행 동기 및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이문과 이혜랑은 정신장애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관해 연구하였다[3]. 해당 연구는 정신장애 주장이 배척된 판례와 정신장애가 인정된 판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신장애'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정신의학계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정신장애의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세 번째, 법원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 관련 용어의 의미를 통일해야 한다. 네 번째, 일반감정 절차와는 다른 정신감정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정신장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정책적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신관우는 2018년에 법원이 공개한 형사판결을 통해 법관의 판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4]. 해당 연구가 초점을 둔 판례는 전주지법 2017노1573(교도소 수용자 상해사건)과 대법원 2018도176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이다. 교도소 수용자 상해 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해당 연구는 '첫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세부적인 진단 기준을 통해 확정된 진단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충동조절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정신적 장애가 주장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감정을 시행하고 생물학적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셋째, 생물학적 요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감정의 전문가는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의학적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정신장애인 판단에 대한 제언을 통해 법관과 정신감정 전문가 간 간섭 금지가 객관적인 정신장애 여부 판단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권영법은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심신장애와 관련된 법률들을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해 우리나라의 심신장애 관련 법률인 「형법」 제10조에 관련된 문제들을 톺아보고, 형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 시간을 검토한 후 분석 내용을 종합해 「형법」 제10조 제2항과 관련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5]. 해당 연구는 현행 정신감정의 문제점으로 감정과 법관의 판단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상 전문가가 피고인과의 면담과 심리검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Rogers 형사책임평가 척도(The 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 : RCRAS) 혹은 범행 당시 범죄인의 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기법인 MSO 기법(Mental State at the time of Offense : MSO)과 같이 범행 당시에 책임능력이 미약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료를 감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는 법관이 가해자의 정신장애를 판단할 때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정신감정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법률과 심리학 간 정신장애라는 용어의 의미 차이로 인하여 법관과 정신감정 전문가 간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긴다는 고충 또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법관의 정신장애 판단기준에만 맞춰져있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들의 특징은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대중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를 인정하는 건수와 정신장애 사건에 대한 온라인상 비정형 빅데이터(여론)를 비교해 법관의 정신장애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자연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였다.

2.2 국민 법감정 분석을 위한 자연어 데이터 분석 방법론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미약"이 포함된 기사의 개수와 기사에 달린 댓글 개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대중들이 심신장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분석하였다. 또한, TF-IDF 분석을 활용하여 댓글 데이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를 알아보았다.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석방법을 수행하는 것은 최근 여러 연구분야에 걸쳐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딥러닝(LSTM) 기법까지 적용하고 있다[11-15]. 특히, 범죄 관련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지송, 서형국, 노승국 등도 온라인 뉴스의 댓글, 대댓글을 분석하여 범죄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16,18,19,2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시각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word cloud와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분석 방법론이다.

2.2.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빅데이터 분석방법에는 워드 클라우드가 있다. 워드 클라우드는 텍스트 마이닝의 방식 중 하나이며,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나 개념을 시각화해준다. 워드 클라우드는 문서에서 단어가 출현한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문서에서 단어가 가지는 중요도를 표현한다. 텍스트가 가지는 특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방대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문서 및 SNS 컨텐츠 내의 정보 추출, 요약 등에 사용된다.

2.2.2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분석

빈도분석은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통해 텍스트의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출현빈도가 높더라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어들은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 요약 시 제외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표가 TF-IDF이다. Term Frequency(이하 TF)란 하나의 문서 안에서 특정한 단어가 등장한 빈도를 의미한다. Inverse Document Frequency(IDF)란 Document Frequency(DF)의 역수로 특정 단어가 발견되는 문서의 수를 의미한다. 즉, 대부분의 문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특정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TF-IDF는 TF와 IDF 두 수치를 곱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 몇 번 언급되며 문서군에서는 얼마나 등장하였는지 표현하는 수치이다. 즉, TF-IDF를 통해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TF-IDF의 공식은 식(1)과 같다.

$$W_{x,y} = tf_{x,y} \times \log\left(\frac{N}{df_x}\right) \tag{1}$$

$tf_{x,y}$ =문서 y에서 단어 x가 나타나는 빈도
df_x =단어 x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
N=전체 문서의 수

따라서, 문서 내에서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거나 전체 문서 중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TF-IDF는 높다. 즉, TF가 크고 IDF가 작을수록 TF-IDF는 커지고 이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문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Ⅲ.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3.1 법관의 정신장애 인정 추세 분석

심신장애를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형법」제10조에 규정된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소관이며, 특정 병질에 대한 형량의 감경 여부와 그 수준은 법령으로 구체화되어있지 않다[2].

우리나라 학자들은 정신장애의 개념과 관련하여 병적인 정신이상(정신병), 심한 의식장애 정신박약, 기타 중대한 정신이상을 정신장애의 내용으로 들고 있다[5]. 대법원은 정신장애의 판단을 위한 생물학적 요소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3]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첫째,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두 번째,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장애라고 주로 부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용어 통일성을 위해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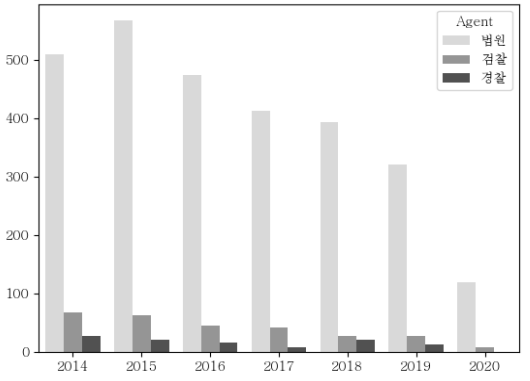

〈그림 1〉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경찰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27건, 검찰에 의뢰한 건수는 68건, 법원에 의뢰한 건수는 509건으로 총 604건이었다. 6년이 지난 후인 2020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경찰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1건, 검찰에 의뢰한 건수는 8건, 법원에 의뢰한 건수는 120건으로 총 129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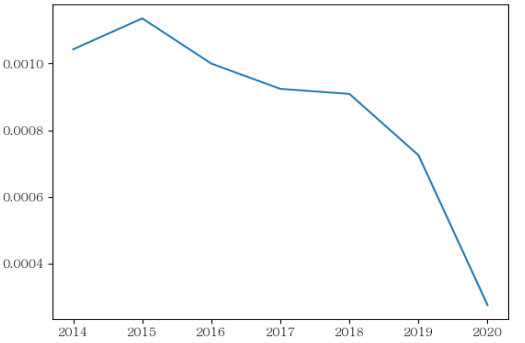

〈그림 2〉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정신감정 의뢰율[7]

또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 대비 정신장애를 주장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의뢰 건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와 변호인이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형 주장에 엄격히 대응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들의 정신감정 신청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정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장애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도가 꾸준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4)]

3.2 심신장애에 관한 온라인에서의 여론 분석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다.[5)] 정일권・김영석(2006),이은주・장윤재(2009), 김경모(2012) 등 많은 연구에서 뉴스 기사에 대한 온라인 포털에서의 댓글이 일반대중들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19-2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진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6)]의 기사 및 관련 댓글을 수집하여 여론을 분석하였다[18-23].

여론 분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 뉴스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심신장애'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의 기사 제목, 기사 내용, 기사 게시 시간, 댓글 등의 정보를 파이썬(Python) 코드를 통해 수집하였다.[7)] 총 7,964개의 언론사 뉴스 기사와 195,182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도별 기사 개수와 댓글 개수를 통해 '심신장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댓글 내용을 형태소 단위로 나눈 후 불용어, 유사어, 제시어 사전 등을 활용하여 전처리된 댓글 데이터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와 TF-IDF 분석을 시행하였다.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의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개수는 2014년에 250개, 2015년에 481개, 2016년에 563개, 2017년에 1,255개, 2018년에 2,490개, 2019년에 1,654개, 2020년에 1,271개이다. 2019년부터 코로나 19가 유행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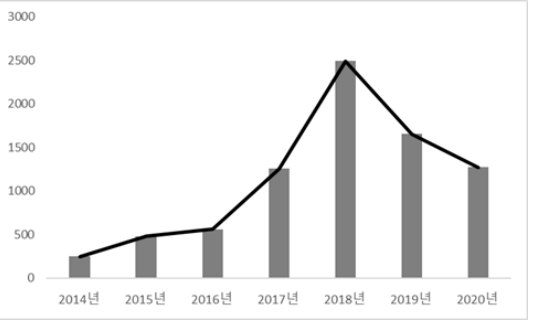

〈그림 3〉 심신장애가 포함된 뉴스 기사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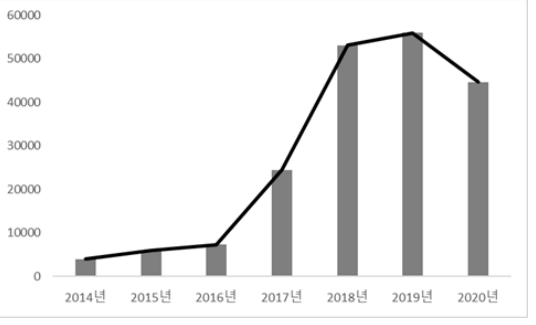

〈그림 4〉 "심신장애"가 포함된 기사의 댓글 개수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을 고려했을 때, 키워드인 '심신장애'에 관한 기사 개수의 증가율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의 개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개수가 2014년에 3,998개였던 반면에 2015년에는 5,952개, 2016년에는 7,282개, 2017년에는 24,429개, 2018년에는 53,069개, 2019년에는 55,867개, 2020년에는 44,585개로 여론의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신장애를 통한 감형에 뜨겁게 집중되고 있다는

4) 본 연구는 경찰청(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작 시점인 2014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의 범죄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 여론(輿論, 영어: public opinion)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론은 한 나라의 정치, 사회에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여론의 조성과 그것의 반영이 중요하다.

6) 2022년 7월 웹 분석 통계자료인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 상의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NAVER)의 국내 포털 점유율은 61.31%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구글(Google)이 28.13%로 2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60%를 상회하는 사용자가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네이버'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국내 사회적 인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네이버 포탈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미 온라인 여론 분석 연구의 상당수가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7) 해당 기간은 경찰청의 범죄 데이터 제공 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참고하였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신장애’ 키워드가 삽입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의 개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해는 2017년과 2018년이다.

2016년 대비 2017년의 기사 개수는 약 122% 증가하였고, 2016년 대비 2017년 댓글 개수는 약 235% 증가하였다. 위 기간 중 폭발적인 증가는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가해자 김성민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다[24].

이후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자 김성수가 PC방 직원을 칼로 8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사건[8]이 2018년 10월 14일에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이 심신장애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25]. 이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9]

본 연구는 ‘심신 미약’으로 수집한 뉴스 기사, 댓글 등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집된 195,182개의 댓글에 대한 제외어, 유의어, 제시어 사전을 작성하였다. 제외어 사전에는 댓글 내용의 주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중립가치적인 단어를 추가하였다.[10] 이를 통해 댓글의 주된 내용을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을 빈도분석 방법론인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형’, ‘처벌’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으며, ‘범죄자’, ‘쓰레기’, ‘악마’ 등의 응보 및 부정적인 어휘를

〈그림 5〉 댓글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빈도분석 결과

통해 댓글의 작성자 대부분이 가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형량을 감형하는 요인인 심신장애와 관련된 기사에 우리나라의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단어를 넣은 댓글을 많이 작성한 것을 통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F-IDF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댓글에 대한 키워드 TF-IDF 순위

순위	키워드	빈도	TF-IDF
1	사형	13054	5395.8
2	심신미약	12353	5065.4
3	법	9732	4433.3
4	살인	8023	4030.5
5	생각	6212	3511.0
6	처벌	6104	3496.3
7	정신	6209	3400.7
8	피해자	6043	3335.0
9	일	5412	3215.1

8) 위 주석 1) 참조.

9)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장애자가 망상이나 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무작위적이고 범죄행동이 이질적이며 잔혹하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박지선, 2016), 대중들에게 더 강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Fazel, Grann, Carlström, Lichtenstein, & Långström, 2009). 최이문・이혜랑,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2018), 41～56.

10) 사람, 없다, 말, 나라, 후, 같다.

11)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한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각각의 출현 빈도수 및 TF-IDF에 따른 키워드 순위변화는 순서대로 '사형', '법', '살인', '처벌', '피해자'로 도출되었다. 빈도 분석과 TF-IDF 순위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댓글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어 '사형'의 빈도수가 13,054번, TF-IDF 값이 5395.8로 가장 큰 값을 가진 결과를 통해 대중들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어 '피해자'의 빈도수가 6,043번, TF-IDF 값이 3335.0으로 키워드 순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심신장애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 '사형'의 빈도수가 13,054번, TF-IDF 값이 5395.8로 가장 큰 값을 가진 결과를 통해 대중들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에 대한 '법'집행을 엄중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살인'사건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한편, 재판을 주관하는 법관 및 경찰에 대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 및 '일 제대로 해라'는 부정적 표현이 매우 많았다. 최근 심신장애 인정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반하는 의견으로 아직 여론은 현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빈도수가 6,043번, TF-IDF 값이 3335.0으로 상위 키워드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심신장애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형사 정책 제언

4.1 법원 판단과 대중 인식의 배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관의 정신장애 인정 건수는 점차 감소하였음에도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와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여론의 주된 생각과 실제 판결 결과의 괴리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여론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형량 감소를 위해 심신장애 주장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째, 여론이 '정신이상항변(insanity defense)이 법률의 결함이며 범죄자들의 도피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

그러나, '심신장애'와 관련된 연구 결과 정신장애 주장 건수 대비 법관의 인정 건수가 20%를 넘지 않는 것은 실제 심신장애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형법 제10조를 남용한다[12]'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3]. 또한, 대중 여론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책임이 조각되거나 양형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중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3]. '주취 감경'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을 보면 정신장애가 책임조각사유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24].

12) 가해자의 정신장애가 범죄 성립의 3대 요소인 책임능력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가해자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범죄 성립의 요건이며, 양형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1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4]과 같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강력범죄는 피해자가 무작위적이고 범죄 행동이 이질적이며, 그 범행이 잔혹해 국민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공포심을 높여주었다[25]. 실제로 2014년에는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와 관련한 기사의 수가 250개,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수가 3,998개였던 반면에 2020년에는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와 관련한 기사의 수가 1,271개,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수가 44,585개로 증가한 것을 통해 여론의 관심이 정신장애 감형 여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은 정신장애를 감경 혹은 무죄의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정신장애 감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6].

이러한 대중들의 비판은 법관은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판단할 때 정신 감정 결과와 함께 제반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제반 사정에는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이 포함된다.[15]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2].

4.2 대중 여론을 반영한 형사 정책 제언

심신장애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첫째로, 피고인 심신장애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심신장애 판단에 영향을 주는 증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증거를 찾게 된다.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건이 발생한 때와 시차가 어느 정도 있기에, 증거가 소멸하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해야 할 증거가 정해진다. 또한,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미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목표인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검사의 반증을 도울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책임능력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했을 때 범죄 발생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심신장애에 대한 법관의 판단기준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검사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다.

13) 묻지마 살인, 서울 서초동 노래방에서. 서울신문) 지인들과 16일 밤부터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갔다가 김씨에 의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08:00경 ◇◇◇모씨가 강서구 소재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넘어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범행 당시 유난히 잔혹했던 점 등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진단서 등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피의자 가족에게 요구하여 우울증 진단서를 받은 후, 김모씨의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에 외뢰하였고 심신상실이나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1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셋째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도와줄 것이다. 판사는 여러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사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다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기초로 하는 증거재판주의가 더욱 확립될 것이다. 또한, 판사들 간 공통으로 공유하는 기준이 생긴다면,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증가할 것이다. 즉, 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와 관련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참고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마찬가지로 심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유한다면 증거재판주의의 공고화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신장애 판단의 불명확성 때문에 제기된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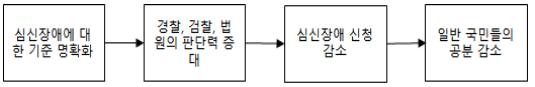

〈그림 6〉 심신장애 기준 명확화에 따른 변화 프로세스

지금까지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과 대중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온라인상 댓글 의견을 분석하고 데이터상 괴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그 원인과 향후 형사 정책까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의 결정에 신중함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에 따라 법의 엄중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심신장애와 관련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 추이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과 대비된 일반 대중들의 의견의 차이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연구 주제, 수집된 데이터, 분석방법은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66689?sid=100

[2] 조성진・조은경, "심신장애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pp.261-281, 2022.

[3] 최이문・이혜랑,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pp.41-56, 2018.

[4] 신관우, "心神障碍人 판단에 대한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pp.105-136, 2019.

[5] 권영법,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5권, pp.33-72, 2013.

[6] 황규리, 이성규, "조현병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8권, pp.63-92, 2019.

[7] 송혜진・김석선, "신문기사를 통해 본 조현병의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pp.375-384, 2021.

[8] 이선형, "온라인 공간에서 결정적 다수의 특성, 조두순 사건과 블로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2권 제4호, pp.43-80, 2015.

[9] 김현옥, "다중살인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 비판 : 진주영구임대아파트 살인방화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한 비정형빅데이터분석 중심", 비판사회정책 제75호, pp.217-256, 2022.

[10] 심정원・김현정・김운한, “언론보도에 나타난 정신건강 연관어의 맥락 및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제124호, pp.128-163, 2020.
[11] 김다예・이영인, “Word2Vec을 활용한 뉴스 기반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용 감성 사전 구축”,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pp.13-20, 2018.
[12] 기호연・신경식, “양방향 LSTM을 적용한 단어의미 중의성”,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5권 제1호, pp. 197-208, 2020.
[13] 박상언,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델에 대한 이해와 현황”, 한국빅데이터학회지 11제7권 제2호, pp. 11-29, 2022.
[14] 고영동・김현수, “지식베이스를 이용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석 플랫폼 개발”,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7권 제2호, pp. 139-152, 2022.
[15] 박상언, “딥러닝 중심의 자연어 처리 기술 현황 분석”,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6권 제1호, pp. 63-81, 2021.
[16] 서형국・정지송・노승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 웹툰 <비질란테>를 통해 본 네티즌의 응보에 대한 여론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pp.189-228, 2020.
[17]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경찰청,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main/ index Page.do
[18] 박상호,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8호, pp.55-73, 2012.
[19] 정일권・김영석,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302-327, 2006.
[20] 이은주・장윤재,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회, 제53권, 제4호, pp.50-71, 2009.
[21] 김경모,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형성”,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학술대회자료, pp.119-121, 2012.
[22] 엄기홍・김대식, “온라인 정치 여론 분석을 위한 댓글 분류기의 개발과 적용: KoBERT를 활용한 여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3호, pp.167-191, 2021.
[23] 장석복・성열홍,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공연예술의 온라인 여론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제57호, pp.79-90, 2017.
[24] 서명자 21만 명 넘어…’주취감경’ 폐지 청원, SBS, 2017년 12월 04일.
[25]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조현병 앓고 있어 감경, 중부일보, 2017년 04월 13일.
[26] 조두순 감형 이유 ‘주취감경’ 폐지 靑 청원, 추천인 20만명 돌파, 동아일보, 2017년 12월 03일.

저 자 소 개

노 승 국(Seungkook Roh)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화학과(이학사)
・2003년 2월 : POSTECH 산업공학과(공학석사)
・2014년 8월 : KAIST 문화기술대학원(공학박사)
・2020년 1월～현재 : 경찰대학 행정학과 및 치안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교수
・관심분야 : 치안 시스템 최적화, 데이터기반 미래예측, 에너지분야 인식분석